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서열목록을 명세서에 적지 않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전자파일은 명세서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26.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제5호의4 및 제5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특허출원서에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의 보정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제21조의4제1항 본문 중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을 “수록한”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의5제3호 중 “출원서류 등”을 “출원서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출원심사 청구

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제65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06조의1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표준에 의하여”를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열목록이 출원 시의 국제출원에 개시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진술서

제106조의13을 삭제한다.

제106조의3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를 준

용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8호가목(4) 중 “135-784”를 각각 “06133”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내용을 반영한 전체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포함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설명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발명의 효과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정 정		
실시에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청구범위	가 능	추 가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가 능	정 정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이후인 경우”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번역문 제출일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설명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능	정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능	정정	
발명의 효과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능	정정	
실시에	가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능	추가/정정/삭제	
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제3호 라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포함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

리자의 출원분은 제외됩니다)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설명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정 정		
배경기술	가 능	정 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 능	추가/정정/삭제		
고안의 내용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 번호단위로만 보정 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 능	정 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 능	정 정		
고안의 효과	가 능	정 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 능	정 정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 능	정 정		
실시에	가 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 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 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 능	추가/정정/삭제		
청구범위	가 능	추 가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가 능	정 정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제4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이후인 경우”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번역문 제출일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식 별 항 목 명	보정단위 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 고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설명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 능	정 정	
기술분야	가 능	추가/정정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배경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고안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에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 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 약	가 능	정 정	
대표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도 면	가 능	추가/삭제	
도	가 능	추가/정정/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구분란 중 “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를 “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  출원 시의 특례 취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표의 국제출원일의 특례에 따른 취하란 다음에 출원 시의 특례 취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출원 시의 특례 취하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
-------------	-----------------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카. 출원 시의 특례 취하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취하(포기)내용】란을 【취하내용】란으로 하고, 【취하내용】란의 다음 행에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자】란을 각각 만들고,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법」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 중 취하하려는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자를 적습니다.

[예] 【취하내용】

【박람회명】 OO OOO 박람회

【박람회출품일자】 2022. 7. 1.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0호마목(1) 중 “【서열개수】 및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서열개수】”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열개수】란에는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 1부”라고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를 “【서열목록】”



**【비특허문헌】**

**【0004】** ○○○○○○○○○○○○○○○○○○○○○○○○○○○○○○○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5】** ○○○○○○○○○○○○○○○○○○○○○○○○○○○○○○○

**【과제의 해결 수단】**

**【0006】** ○○○○○○○○○○○○○○○○○○○○○○○○○○○○○○○

**【발명(고안)의 효과】**

**【0007】** ○○○○○○○○○○○○○○○○○○○○○○○○○○○○○○○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8】**

**【도 1】** ○○○○○○○○○○○○○○○○○○○○○○○○○○○○○○○

**【도 2】** ○○○○○○○○○○○○○○○○○○○○○○○○○○○○○○○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9】** ○○○○○○○○○○○○○○○○○○○○○○○○○○○○○○○

**【0010】** ○○○○○○○○○○○○○○○○○○○○○○○○○○○○○○○

○○○○○○○○○○○○○○○○○○○○○○○○○○○○○○○○

**【실시예 1】**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을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의 제출구분란 중 “ 서열목록보정”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표의 서열목록보정란을 삭제하며,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10호가목(6) 중 “서열목록 등 또는 서열목록보정”을 “서열목록 등”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Box No. II, Box No. IV 및 BOX No. IX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b>Box No. II APPLICANT</b> <input type="checkbox"/> This person is also inventor	
Name and address : <i>(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he country of the address indicated in this Box is the applicant's State (that is, country) of residence if no State of residence is indicated below.)</i>	E-mail address*
	Telephone No.
	Facsimile No.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p><b>* E-mail authorization:</b> Indicating an e-mail address above authorizes the receiving Office,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if they provide such a service, to send notifications exclusively by e-mail to that address, unless the following box is marked:</p> <input type="checkbox"/> notifications are requested to be sent exclusively by postal mail.	
State <i>(that is, country)</i> of nationality:	State <i>(that is, country)</i> of residence:
This person is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input type="checkbox"/> all designated States <input type="checkbox"/> the States indicated in the Supplemental Box	
<b>Box No. IV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b>	
The person identified below is hereby/has been appointed to act on behalf of the applicant(s) before the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ies as: <input type="checkbox"/> agent <input type="checkbox"/> common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 <i>(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i>	E-mail address*
	Telephone No.
	Facsimile No.
	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p><b>* E-mail authorization:</b> Indicating an e-mail address above authorizes the receiving Office,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if they provide such a service, to send notifications exclusively by e-mail to that address, unless the following box is marked:</p>	

<input type="checkbox"/> notifications are requested to be sent exclusively by postal mail.	
<input type="checkbox"/> <b>Address for correspondence</b> : Mark this check-box where no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is/has been appointed and the space above is used instead to indicate a special address to which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b>Box No. IX CHECK LIST for PAPER filings</b> - this sheet is only to be used when fil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on <b>PAPER</b>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b>contains the following</b> : (a) request form PCT/RO/101 (including any declarations and supplemental sheets) ..... : (b) description ..... : (c) claims ..... : (d) abstract ..... : (e) drawings (if any) ..... :  <hr/> <b>Total number of sheets</b> : (f) sequence listing part of the description as a WIPO Standard ST.26 XML file (indicate type and number of physical data carrier(s)) : ..... :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b>accompanied by</b> the following item(s) ( <i>mark the applicable check-boxes below and indicate in right column the number of each item</i> ): 1. <input type="checkbox"/> fee calculation sheet ..... : 2. <input type="checkbox"/> original separate power of attorney ..... : 3. <input type="checkbox"/> original general power of attorney ..... : 4. <input type="checkbox"/>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reference number: ..... : 5. <input type="checkbox"/> priority document(s) identified in Box No. VI as item(s) ..... : 6. <input type="checkbox"/>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into ( <i>language</i> ): ..... : 7. <input type="checkbox"/> separate indications concerning deposited microorganism or other biological material ..... : 8. <input type="checkbox"/> copy of results of earlier search(es) (Rule 12bis.1(a)) ..... : 9. <input type="checkbox"/> other ( <i>specify</i> ): ..... :
<b>Figure of the drawings</b> which should accompany the abstract:	<b>Language of filing</b>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별지 제41호서식 기재요령 제2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E-mail address”란에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은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은 통지서를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며, 해당 관청이 추가적으로 서면 통지서를 보내려는 경우 외에는 서면 통지서가 우편발송되지 않습니다.

다. 모든 관청이 이메일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PCT Applicant's Guide Annex B 참조). 이메일 주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받았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이메일 통지서 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통지서는 우편으로만 송부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메일이 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신인의 책임이며, 출원서에 적은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항은 규칙 92의2에 따라 가급적 국제 사무국에 직접 기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모두 이메일 송부 동의를 한 경우 이메일은 선임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만 송부됩니다. “Telephone No. 및 Facsimile No.” 란에는 전화 및 팩스번호를 적되, 국가코드 및 지역코드도 함께 적습니다. 별지 제41호서식 기재요령 제2호마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E-mail address”란에 대해서는 다목의 3)과 같습니다.

별지 제41호서식 기재요령 제2호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안에 X표시하고 그 제출부수를 적습니다. 국제출원이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의 개시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서열들은 WIPO 표준 ST.26을 준수하여 서열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서열목록 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열목록 전자파일이 너무 커서 수리관청의 온라인 출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출원인은 해당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물리적



<p>(a) 출원서 서식 PCT/RO/101 (모든 선언서 및 추가 용지 포함) .....</p> <p>(b) 발명의 설명</p> <p>(c) 청구범위 .....</p> <p>(d) 요약서 .....</p> <p>(e) 도면 (있는 경우) .....</p> <p><b>총 용지 매수</b> :</p> <p>(f) WIPO 표준 ST.26 XML 파일로서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 (물리적 매체들의 형태 및 매수를 기재하십시오.) .....</p>	<p><i>하고 오른쪽 열에 각 항목의 개수를 표기한다.</i></p> <p>1.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계산 용지 .....</p> <p>2. <input type="checkbox"/> 개별위임장 원본 .....</p> <p>3. <input type="checkbox"/> 포괄위임장 원본 .....</p> <p>4. <input type="checkbox"/> 포괄위임장 사본; 참조번호 .....</p> <p>5. <input type="checkbox"/> 제6기제란에 다음 항목으로 명시된 우선권서류 .....</p> <p>6. <input type="checkbox"/> 국제출원 번역문 (<i>번역문의 언어</i>): .....</p> <p>7. <input type="checkbox"/> 기탁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별도의 표시 사항(<i>번역문의 언어</i>): .....</p> <p>8. <input type="checkbox"/> 선조사보고서의 사본(규칙 12의2.1(a)) .....</p> <p>9. <input type="checkbox"/> 기타 (<i>구체적으로 명시</i>): .....</p>
<p>요약서에 수반되어야 할 <b>도면 번호</b>:</p>	<p>국제출원의 <b>출원 언어</b>:</p>

별지 제41호의2서식 기재요령 제2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E-mail address”란에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은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사무국은 통지서를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며, 해당 관청이 추가적으로 서면 통지서를 보내려는 경우 외에는 서면 통지서가 우편발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청이 이메일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PCT Applicant’s Guide Annex B 참조). 이메일 주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받겠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이메일 통지서 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통지서는 우편으로만 송부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메일이 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신인의 책임이며, 출원서에 적은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항은 규칙 92의2에 따라 가급적 국제 사무국에 직접 기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모두 이메일 송부 동의를 한 경우 이메일은 선임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만 송부됩니다. “Telephone No. 및 Facsimile No.” 란에는 전화 및 팩스번호를 적되, 국가코드 및 지역코드도 함께 적습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기재요령 제2호마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E-mail address”란에 대해서는 다목의 3)과 같습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기재요령 제2호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출원의 각 구성서류의 면수를 표시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안에 X표시하고 그 제출부수를 적습니다. 국제출원이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의 개시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서열들은 WIPO 표준 ST.26을 준수하여 서열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서열목록 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열목록 전자파일이 너무 커서 수리관청의 온라인 출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출원인은 해당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물리적 매체로 제출하고 그 매체의 유형 및 수를 명시할 수 있으며,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이 서면으로 제출되는 경우 그 서열목록

은 “서열목록”으로 표시한 물리적 매체로 제출하며 그 매체의 그 유형 및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별지 제43호서식 기재요령 제2호나목(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9)를 삭제한다.

(8)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配列表)

해당하는 경우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을 조약시행세칙에 규정된 표준에 따라 작성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1호서식 Box No. II 및 Box No. III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Box No. IV 중 “□ in the form of an Annex C/ST.25 text file” 및 “□ on paper or in the form of an image file”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서식 BOX No. VI를 다음과 같이 한다.

<b>Box No. II APPLICANT(S)</b>	
Name and address: <i>(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i>	E-mail address*
	Telephone No.
	Facsimile No.
	Applica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p><b>* E-mail authorization:</b> Indicating an e-mail address above authorizes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if they provide such a service, to send notifications exclusively by e-mail to that address, unless the following box is marked:</p> <p><input type="checkbox"/> notifications are requested to be sent exclusively by postal mail.</p>	
<b>Box No. III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b>	
<p>The following person is <input type="checkbox"/> agent <input type="checkbox"/> common representative  and <input type="checkbox"/> has been appointed earlier and represents the applicant(s) also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input type="checkbox"/> is hereby appointed and any earlier appointment of (an) agent(s)/common representative is hereby revoked.  <input type="checkbox"/> is hereby appointed, specifically for the procedure before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in addition to /common representative appointed earlier.</p>	

Name and address: <i>(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i>	E-mail address*
	Telephone No.
	Facsimile No.
	Agent's registration No. with the Office
<p>* <b>E-mail authorization:</b> Indicating an e-mail address above authorizes the International Bureau and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if they provide such a service, to send notifications exclusively by e-mail to that address, unless the following box is marked:</p> <input type="checkbox"/> notifications are requested to be sent exclusively by postal mail.	
<input type="checkbox"/> <b>Address for correspondence:</b> Mark this check-box where no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is/has been appointed and the space above is used instead to indicate a special address to which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b>Box No. VI CHECK LIST</b>																		
<p>The demand is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language referred to in Box No. IV,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p> <p>1.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 sheets</p> <p>2. amendments under Article 34 : sheets</p> <p>3. letter accompanying the amendments under Article 34(Rule 66.8) : sheets</p> <p>4. copy (or, where required, translation) of amendments under Article 19 : sheets</p> <p>5. copy of the letter accompanying the amendments under Article 19(Rule 46.5(b) and 53.9) : sheets</p> <p>6. copy (or, where required, translation) of any statement under Article 19(Rule 62.1(ii)) : sheets</p> <p>7. other (<i>specify</i>) : sheets</p>	<p>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y</p> <table border="1"> <thead> <tr> <th>received</th> <th>not received</th> </tr> </thead> <tbody> <tr><td><input type="checkbox"/></td><td><input type="checkbox"/></td></tr> </tbody> </table>		received	not received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received	not received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The demand is also accompanied by the item(s) marked below:</p> <table border="0"> <tr> <td>1. <input type="checkbox"/> fee calculation sheet</td> <td>5. <input type="checkbox"/> sequence listing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ule 13ter)</td> </tr> <tr> <td>2. <input type="checkbox"/> original separate power of attorney</td> <td>6. <input type="checkbox"/>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sequence listing does not go beyond the disclosure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filed</td> </tr> <tr> <td>3. <input type="checkbox"/> original general power of attorney</td> <td>7. <input type="checkbox"/> other (<i>specify</i>): _____</td> </tr> <tr> <td>4. <input type="checkbox"/>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reference number, if any:</td> <td></td> </tr> </table>			1. <input type="checkbox"/> fee calculation sheet	5. <input type="checkbox"/> sequence listing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ule 13ter)	2. <input type="checkbox"/> original separate power of attorney	6. <input type="checkbox"/>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sequence listing does not go beyond the disclosure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filed	3. <input type="checkbox"/> original general power of attorney	7. <input type="checkbox"/> other ( <i>specify</i> ): _____	4. <input type="checkbox"/>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reference number, if any:									
1. <input type="checkbox"/> fee calculation sheet	5. <input type="checkbox"/> sequence listing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ule 13ter)																	
2. <input type="checkbox"/> original separate power of attorney	6. <input type="checkbox"/>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sequence listing does not go beyond the disclosure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filed																	
3. <input type="checkbox"/> original general power of attorney	7. <input type="checkbox"/> other ( <i>specify</i> ): _____																	
4. <input type="checkbox"/> copy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reference number, if any:																		

별지 제51호서식 기재요령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Box No. II APPLICANT(S)”란의 “Name and address”란에는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을 적습니다. 적을 출원인의 란이 부족할 경우 하단에 있는 “Further applicants are indicated on a continuation sheet”의 앞  안에 X 표시하고 다음 쪽에 계속하여 출원인을 적

습니다. 출원인에 관한 기재요령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Box No.Ⅱ APPLICANT”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E-mail address”란에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은 경우 국제사무국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통지서를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며,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추가적으로 서면 통지서를 보내려는 경우 외에는 서면 통지서가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청이 이메일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PCT Applicant’s Guide Annex B 참조). 이메일 주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받겠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메일 통지서 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통지서는 우편으로만 송부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메일이 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신인의 책임이며, 출원서에 적은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항은 규칙 92의2에 따라 가급적 국제사무국에 직접 기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모두 이메일 송부 동의를 한 경우 이메일은 선임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만 송부됩니다.

5. “Box No. Ⅲ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Box No. Ⅳ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E-mail address”란과 관련된 기재요령은 Box No. II와 같습니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제2기재란 및 제3기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기재란 중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및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서식 제6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b>제2기재란 출원인</b>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특허고객번호
<p>* 이메일 송부 동의: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란에 표시한다.</p> <p><input type="checkbox"/> 우편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p>	
<b>제3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b>	
<p>아래에 적은 자는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로서</p> <p><input type="checkbox"/> 이미 선임된 자로서, 국제예비심사에 대해서도 출원인을 대리하는 자이다.</p> <p><input type="checkbox"/>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자로서, 전에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되었다.</p> <p><input type="checkbox"/> 이미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더하여, 특별히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한 절차를 위해 새로 선임된 자이다.</p>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번호
<p>* 이메일 송부 동의: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란에 표시한다.</p> <p><input type="checkbox"/> 우편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p>	

제6기재란 체크 리스트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접수	미접수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해서 제4기재란에 표시된 언어로 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1. 국제출원의 번역문	: 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서	: 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된 서열목록			
4.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서를 첨부한 서한(규칙 66.8)	: 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서(또는 요청된 경우, 번역문)의 사본	: 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서를 첨부한 서한의 사본(규칙 46.5(b) 및 53.9)	: 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설명서(또는 요청된 경우, 번역문)의 사본(규칙 62.1(ii))	: 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기타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적음)	: 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또한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1.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계산 용지	5. <input type="checkbox"/> 국제예비심사를 목적으로 한 서열목록(규칙13의3)		
2. <input type="checkbox"/> 개별위임장 원본	6. <input type="checkbox"/> 서열목록이 출원 시 국제출원의 개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		
3. <input type="checkbox"/> 포괄위임장 원본	7.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_____		
4. <input type="checkbox"/> 포괄위임장 사본			

별지 제51호의2서식 기재요령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기재란 출원인”란의 “성명(명칭) 및 주소”란에는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을 적습니다. 적을 출원인의 란이 부족할 경우 하단에 있는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의 앞  안에 X 표시하고 다음 쪽에 계속하여 출원인을 적습니다. 출원인에 관한 기재요령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2기재란 출원인”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란에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은 경우 국제사무국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통지서를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며,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추가적으로 서면 통지서를 보내려는 경우 외에는



(2) 【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습니다. 또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제출하고, 【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라 적고, 해당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제1항, 제106조의38,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출원을 출원한 경우에는 제54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2. (생략)

3.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출원서류 -----  
-----  
-----  
-----  
-----  
-----  
-----  
-----  
-----

4.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5. ~ 8. (생략)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

의 다음 날부터 그 서열목록 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5. ~ 8. (현행과 같음)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하다는 진술서

② ~ ⑤ (생략)

제106조의13(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정) ①명세서의 서열목록부분이 조약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정서 3통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06조의12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12 및 제106조의13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핵산염기 서열 또

않는다는 진술서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의12를 준용한다.